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한국방재협회장

1. 신청인

법인명	(주)그린텍 (대표 이정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71511-*****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농공단지길 35-23

2. 기술명 : 유량 손실 저감용 인터널 그루브 웨어링 및 펌프의 성능과 내구성 저하를 막기 위한 슬리브가 부착된 흡입관이 적용된 수중 펌프

3. 기술내용(요약)

- 케이싱의 내주면에 체결되어 케이싱과 임펠러 사이 간극의 압력차이로 인해 유량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인터널 그루브 웨어링을 적용하고, 케이싱의 일단에 장착되어 흡입관 내부에 발생하는 공동현상으로 인해 펌프의 성능 저하 및 내구성 저하를 막는 슬리브가 부착되는 흡입관을 적용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우수 강제배수 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펌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중 펌프이다.

4. 기술범위

- 유량 손실을 막기 위해 인터널 그루브 웨어링을 케이싱과 임펠러 사이에 장착하고, 펌프의 성능 저하 및 내구성 저하를 막기 위해 슬리브가 부착된 흡입관을 케이싱의 일단에 장착한 수중 펌프

5.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02-6952-9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이해관계인 의견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나. 이해관계인 서약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붙임1 서식)
- 다. 신청서 열람 요청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라. '가'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 자료

7. 제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02-6952-9388)

※ 이해관계인 의견 반려 사항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